

## 국제출원

**Q** 국제출원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?

**A**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,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해야 합니다. 이때 최초의 출원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PCT(특허협력조약 : Patent Cooperation Treaty)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 직접 해외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할 나라의 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보다 쉽게 출원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
**Q**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 할 수 없습니까?

**A**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,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**Q** 출원인은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?

**A** 국제출원 시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

있습니다. 참고로 모든 지정국의 취하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취급되며, 우선권 주장의 취하로 인하여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.

**Q** PCT 국제출원을 조기공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**A**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경과 직후에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 공개됩니다. 이것을 조기공개하려면 출원인이 직접 국제 사무국에 조기공개를 신청해야 하며,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 조기공개 신청을 받으면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.

**Q** 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언제 보정을 할 수 있습니까?

**A** 국제 조사 단계에서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 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한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(조약제19조, 단 청구 항만 가능,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).

국제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때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(조약 제34조, 명세서, 청구범위, 도면 등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횟수에 제한 없이 제출가능).

**Q** PCT 출원 후 출원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**A** PCT 출원 후 출원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변경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. 그러면 수리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관청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의 성명 등을 변경합니다.



김석현 변리사

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고,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를 지냈으며 법무법인 충정에서 특허부를 총괄했다. 현재 청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를 맡고 있다.

문의 : (02)521-7671  
e-mail : kimsh@chwpat.com